

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의안 번호	14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11.
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취득으로 매입 3건 13필지 12,138㎡ 798,533천원이고, 건물취득 1건 1동(3,250㎡) 6,406,000천원입니다.

가. 토지 취득

- ① 매입 : 정명화 거장 클래식 공원 조성 (문화관광과)
 - ▷ 방림면 계촌리 1520-4번지외 7필지 5,223㎡ 101,828천원(공시지가)
- ② 매입 :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(자치행정과)
 - ▷ 평창읍 하리 231-1번지외 2필지 2,055㎡ 689,477천원(공시지가)
- ③ 매입 : 남산 일원 균유림 집단화사업 (산림과)
 - ▷ 평창읍 중부리 산59번지외 1필지 4,860㎡ 7,228천원(공시지가)

나. 건물 취득

- ① 신축 :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(자치행정과)
 - ▷ 평창읍 하리 235-5번지외 8필지 1동 3,250㎡ 6,406,000천원(사업비)

3. 붙임자료

- 가.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부.
- 나. 사업계획서 1부.
- 다. 관련법령 발췌 1부.

2016년 취득·처분대상 재산목록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기준가격	취득 시기	취득사유	비 고 (소유자)
	지목	소재지	수량				
토지 취득 (3건, 13필지)			12,138	798,533			
소계 (8필지)			5,223	101,828			
1	전	방림면 계촌리 1520-4	790	16,590	상반기	정명화 거장 클래식 공원 조성	국 (기획재정부)
	답	" 1520-5	1,327	25,876			
	답	" 1520-6	1,518	29,601			
	대	" 1520-7	648	15,617			
	답	" 1520-8	607	11,837			
	전	" 1520-16	152	1,053			
	대	" 1520-17	155	1,074			
	답	" 1520-18	26	180			
	소계 (3필지)			2,055			
2	전	평창읍 하리 231-1	1,750	555,100	상반기	보건의료원 이전 신축	이봉*외1
	전	" 235-1	263	118,350			이학*
	답	" 235-23	42	16,027			이학*
소계 (2필지)			4,860	7,228			
3	임	평창읍 종부리 산59	2,777	3,999	상반기	남산 일원 군유림 집단화	이영*
	임	" 산60-1	2,083	3,229			이영*
건물 취득 (1건, 1동)			3,250	6,406,000			
소계 (1동)			3,250	6,406,000			
1	대	평창읍 하리 235-5외 8	3,250	6,406,000	'16. 4월 ~'17. 7월	보건의료원 이전 신축	평창군 외 6

<사업계획 1>

정명화 거장 클래식 공원 조성계획

- '정명화 거장 클래식 공원'을 조성하여 첼리스트 거장인 정명화와 함께하는 클래식 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하여 계촌마을을 지속가능한 예술마을로 만들어 가고자 함.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정명화 거장 클래식 공원 조성공사
- 위치 : 방림면 계촌리 1520-4번지 일원
- 사업량 : 공원조성 1식 (부지면적 5,223㎡)
 - 무대 1식(기초), 소공연장 3개소, 운동·편의시설, 조형물, 조경수 식재 등
- 사업기간 : '16년 ~ '17년(2년간)
- 사업비 : 1,000백만원

계	조경공사	부지매입	설계비
1,000	614	350	36

□ 추진상황

- 계촌별빛오케스트라 창단 : '09년
-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다짐 행사 식전연주회 : '14. 8월
- 2014 사랑 심는 계촌별빛오케스트라 희망콘서트 : '14. 10월
- 클래식 계촌 희망마을 운영위원회 구성 : '15. 4월
- 클래식세상 계촌마을 프로젝트 설명회 개최(정몽구재단, 한예총) : '15. 4월
- 2015 사랑 심는 계촌별빛오케스트라 희망콘서트 : '15. 6월
- 첼리스트 정명화와 함께 하는 클래식세상 계촌마을 축제 개최 : '15. 7. 10 ~ 12(3일간)

□ 취득대상 재산목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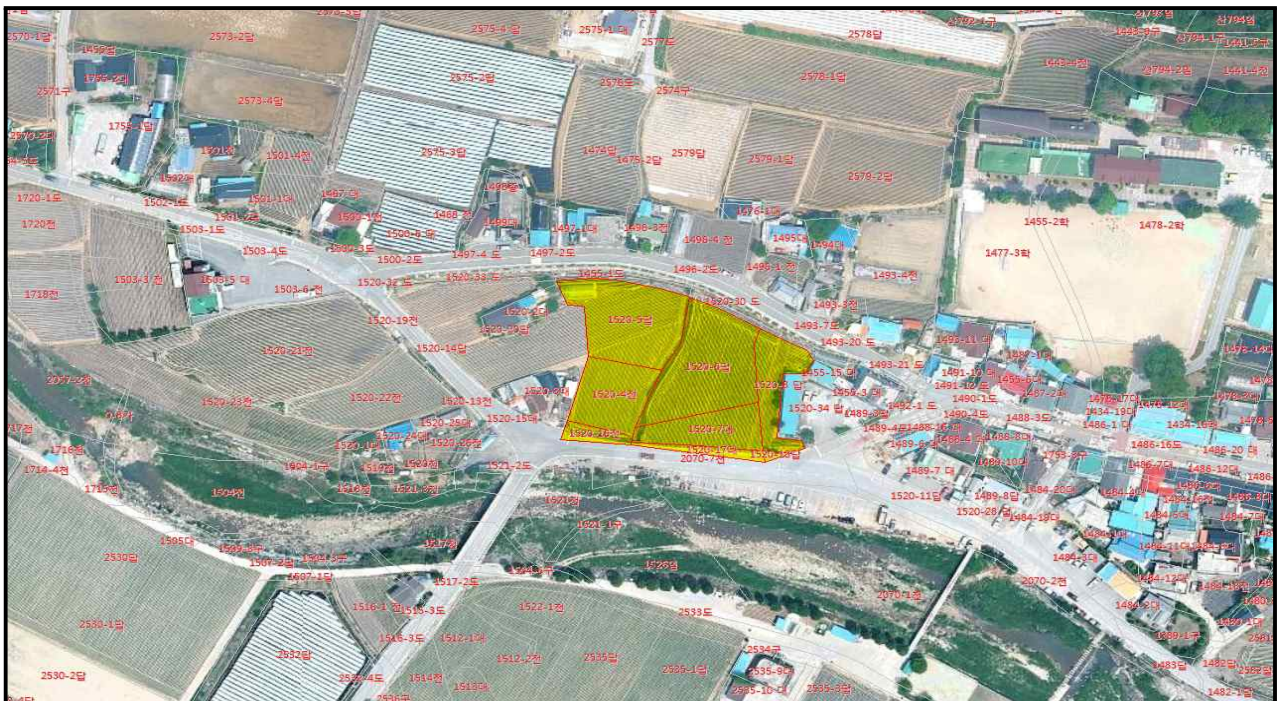
(단위:m²,원)

토지소재	지번	지목	면적	재산가액		소유자
				기준가격	추정가격	
계	8필지		5,223	101,828,490	350,000,000	
방림면 계촌리	1520-4	전	790	16,590,000	57,023,000	국 (기획재정부)
	1520-5	답	1,327	25,876,500	88,942,000	
	1520-6	답	1,518	29,601,000	101,743,000	
	1520-7	대	648	15,616,800	53,677,000	
	1520-8	답	607	11,836,500	40,683,000	
	1520-16	전	152	1,053,360	3,620,000	
	1520-17	대	155	1,074,150	3,692,000	
	1520-18	답	26	180,180	620,000	

□ 향후 추진계획

- 부지매입 및 사업추진 : '16. 1월 ~ '17. 6월

□ 위치도



<사업계획 2>

보건의료원 이전 신축계획(변경)

- 건물 노후로 관리비용의 증가 및 군민들의 의료서비스 욕구는 높아지고 교통 발달로 인근 도시 대형병원의 접근이 쉬워져 의료원 이용률 저하
 - ⇒ 교통 약자 및 고령층의 접근이 편리한 시가지로 이전 신축
 - ⇒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환경의 획기적 개선 및 국비확보 전략 수정

□ 사업개요

- 위 치 : 평창읍 하리 235-5번지외 8필지
- 사업량 : 신축 1동(지하 1층/지상 3층, 연면적 3,250㎡)
- 총사업비 : 9,006백만원(국비 4,292, 도비 1,025, 군비 3,689) (단위:백만원)

재원별	총사업비	기투자	2015년			향후계획
			계	확보	미확보	
계	9,006	-	2,600	1,400	1,200	6,406
국비	4,292	-	-	-	-	4,292
도비	1,025	-	-	-	-	1,025
군비	3,689	-	2,600	1,400	1,200	1,089

* 건축비 국비지원 ㎡당 1,870천원, (보조비율 : 국비 67%, 도비 16%, 군비 17%)

- 사업기간 : '15. 5월 ~ '17. 7월 ('16. 4월 착공예정)

□ 사업대상지

구분	토지소재	지번	지목	면적(㎡)	소유자	비고
계		9필지		4,777		
소계		6필지		2,722		
당초	평창읍 하리	235-5	전	652	최신*	
		435-3	구거	136	최신*	
		235-14	전	318	조대*	
		233	전	521	천장*	
		77-3	대	526	평창중고등학교동문회	건물1동
		77-1	대	569	평창군	現 주차장
소계		3필지		2,055		
추가	평창읍 하리	231-1	전	1,750	이봉*외 1	
		235-1	전	263	이학*	
		235-23	답	42	이학*	

□ 취득대상 재산목록(추가)

○ 토지취득(매입)

(단위:m²,원)
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	재산가액		소유자
				기준가격	추정가격	
계	3필지		2,055	689,477,200	1,022,000,000	
평창읍 하리	231-1	전	1,750	555,100,000	768,000,000	이봉*외1
	235-1	전	263	118,350,000	219,000,000	이학*
	235-23	답	42	16,027,200	35,000,000	이학*

※ 토지매입비는 가감정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감정평가시 변동될 수 있음.

○ 건물취득 : 건립 1동

- 변경(건립)

(단위:m²,원)

구분	시설명	위 치	연면적	규모	구조	사업비
당초	평창보건소	하리 235-5외 5	2,275	지하1층 지상2층	철근콘크리트조	3,885,000,000
변경	보건의료원	하리 235-5외 8	3,250	지하1층 지상3층	철근콘크리트조	6,406,000,000

□ 향후 추진계획

- 건물 신축 및 토지 추가매입비 확보('16년 당초예산) : '15. 12월
- 토지매입 절차 이행 : '15. 9월~'16. 2월
-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 투·융자 심사 : '15. 12. 30까지
- 건물신축 사업추진 : '16. 4월~'17. 7월

□ 위치도



남산 일원 균유림 집단화 추진계획

- 남산 일원을 중심으로 균유림과 인접하여 있고, 산림욕장 관리 등 산림개발사업 추진 시 활용도가 높은 주변토지 취득으로 균유림을 집단화하여 장래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자 함.

□ 현 황

- 평창읍 종부리 및 상리 일원에 걸쳐 위치한 남산은 산림 욕장과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어 휴양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연중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,
- 남산 일원 숲가꾸기 작업 등 산림욕장과 등산로 관리시 토지 소유자의 부재 및 비협조 등으로 체계적인 산림관리가 어려운 실정임.

□ 취득대상 재산목록

(단위: m², 원)
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	재산가액		소유자
				기준가격	추정가격	
계	2필지		4,860	7,228,000	145,800,000	
평창읍 종부리	산59	임야	2,777	3,999,000	83,310,000	이영*
	산60-1	임야	2,083	3,229,000	62,490,000	이영*

□ 검토의견

- 산림개발사업 등 균유림의 이용가치 제고를 위해 매입 필요
 - 상리 산48-1(187,041m²)와 인접지로 삼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 용이
 - 현황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종합운동장 및 계획중인 목재문화체험관과 연계한 개발 등 활용가치가 높아 향후 행정수요 대비

□ 위치도



〈관계법령 발췌〉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·변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른다.

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[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으로 한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
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

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
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
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

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